

제21조의5(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)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9. 6. 28.>

② 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.<개정 2016. 7. 4., 2020. 12. 29.>

1.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[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(이하 “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입력된 운송완료 횟수를 말하되, 1일 1회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로 계산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2제2항에서 같다]가 연간 96회 이상인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

2.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가 연간 96회 미만인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

- 가.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망 ·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
- 나. 천재지변, 화재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.

④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직접운송의 인정기준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.<개정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11. 12. 31.]

[제21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의5는 제21조의6으로 이동 <2016. 6. 30.>]

제21조의6 삭제 <2020. 6. 17.>

제21조의7(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)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 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 · 포장 및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2. 1. 28.>

1. 삭제 <2022. 1. 28.>

2. 삭제 <2022. 1. 28.>

[본조신설 2018. 12. 31.]

제22조(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)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7. 11., 2015. 5. 26., 2017. 1. 6., 2018. 12. 31., 2020. 6. 17., 2020. 12. 29.>

1. 삭제 <2018. 12. 31.>

2. 삭제 <2014. 11. 28.>

3.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

4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 · 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고장 · 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- 가. 고장 · 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 · 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
- 나.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

5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 · 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 · 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